

“등록증 반납, 불복종운동도 불사하겠다”

베른협약 가입 앞두고, 출판계 초긴장 상태

베른협약 가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미 국내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4월)와 공청회(6월)를 거쳤고 올해 국회 통과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 저작권법 개정안에 관한 미국정부측 의견>을 문체부에 제출, 압력을 가함으로써 기쁘거나 불황으로 위축된 출판계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

이에 ‘출협’은 저작권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후 잇따른 대책회의를 가졌고, 지난 9월 중순에는 미국측에 대표단을 파견, 우리 출판계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한 바 있다. 베른협약에 따른 출판문화계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온갖 대응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측을 만나고 돌아온 윤청광 저작권대책위원장으로 부터 경과보고를 들어본다. <편집자>

—미국측이 우리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제기한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크게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소급보호 시점의 문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내법에 따른 1957년 1월1일 이후 사망자의 저작물만 보호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측은 1946년(협정발효일인 1996년을 기점으로 50년전) 1월1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는 우리나라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이 발효된 95년 이전에 기변역된 출판물을 계속 출판하고자 할 때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계속 출판할 수 있으나, ‘저작권자가 보상을 청구할 경우 보상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국내 출판사들의 ‘배타적 허락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저작권자의 권리가, 요청이 있을 때만 보상하는 ‘보상권’의 수준으로 축소돼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셋째, 우리가 개발도상국의 유예기간을 활용, 법 시행일로부터 4년간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법규전환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주장이다. 넷째, 저작권 보호의 저작물이라도 발표된 지 10년 이내에 번역되지 않은 저작물은 번역할 수 있도록 한 우리의 ‘번역권 10년 단기보호제도’는 협정위반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한 미국측 문제제기에 이번에 ‘대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전 출판사들의 등록증 반납과 함께

지적재산권협정에 대한 불복종 운동도

불사할 것이다. 반미운동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우리의 각오는

비장하다. 저작권을 존중하되

단지 유예기간을 두어 그 충격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뜻이다. 출판계는

촉각을 곤두세워 지켜보고 있다.”

책위’에서는 어떤 입장을 전달하고 왔는가.

“우선 소급보호 시점의 문제는 우리의 구 저작권법이 사후 30년간 보호로 규정돼 있었으므로 국내법 우선의 법이론상 양보해선 안된다. 57년 1월1일 이후 사망자의 저작물에 한해서 소급보호할 수 있다는 우리의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 또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간 기변역된 출판물에 대해 유예기간을 둔 우리의 개정안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많은 혼란이 온다는 점을 충분히 이야기했다. 법 실행이 가져올 충격을 생각하면 우리의 경우 4년도 너무 짧다. 미국측은 이에 대해 ‘Yes’도 ‘No’도 아닌 상태다. 번역권 단기 보호제도의 문제도 문화수입국인 우리의 학술출판이 살아남으려면 87년 이전의 저작물 만이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상황을 설명했다.”

—미국측은 결국 우리 개정안의 ‘개도국 조항’ 적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 한국이 모든 면에서 개발도상국가의 단계는 넘어섰다는 게 미국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우리의 문화 수준은 부끄럽지만 후진국이다.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국민소득 1만달러에 이르렀지만, 문화수준은 낙후돼 있지 않은가. 한 예로 도서관의 현실에서 나타난다. 미국과 일본에 비해 도서관구입비는 부끄러울 만큼 낮다. 일본의 한 공공도서관의 한달 도서관구입비가 월 7천만 원이라면 우리는 120~180만원 정도인 형편이다. 우리의 도서관 1인당 장서율이 0.18



윤청광 위원장.

권인데 이는 아프리카 탄자니아(0.17권)보다 조금 높은 수치다. 이런 낙후된 상황에서 어떻게 의무만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겠는가. WTO트립스 규정 안에서 최대한의 권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문화적인 충격은 다른 어떤 경제적인 충격보다도 그 피해가 넓고 깊게 퍼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자주권과도 결부된 사안이 아니겠는가.”

—저작권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했는가.

“우선 문화체육부에 학술출판진흥기금을 요청하고 출협에 ‘해외저작권 증개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문제는 학술서 출판이다. 지금도 통속적이고 대중적인 출판물은 엄청난 로열티를 지불하면서까지 계약하려는 상황이고, 어차피 계약할 바엔 대형 판매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고작 500부 정도 팔릴까 말까한 학술서를 누가 계약하려 하겠는가. 우리는 중요한 학술서적을 출판하려는 회원사들의 편의를 위해 ‘해외저작권증개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결국 학술서 출간의 위축은 단지 출판문화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지식생산의 불모화가

끼치는 영향은 장기적이며 광범하다. 정부는 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충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측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제 우리의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보는 만큼 이후의 진행상황을 지켜보겠다. 공은 정부측에 넘어갔다. 외국의 압력에 무조건 굴복하지 말고 트립스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권리를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다. 만약 우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 출판사의 등록증 반납도 불사하고,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 우리의 각오는 비장하다.”

외국압력에 전면 굴복한다면 반미운동까지도 벌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美國)을 ‘米國’ 혹은 ‘尾國’으로 표기하자는 운동을 벌일 수 있다. 세계저작권협약 가입을 앞두고 당시 미대통령인 레이건과 미국책 2만권의 화형식을 갖고 미문화원을 점령해 항의 농성을 전개한 적도 있었다. 군사정권하에서도 있었던 그런 사태가 재현되지 않는다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출판계의 상황이 절박한 만큼 비장한 분위기가 고조돼 있다.”